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시50:5, 롬1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서기
 제 목 총회 헌법시행규정 개정 안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제107회 총회(2022.9.20.~21, 양곡교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 선택) 1, 5, 7, 11항과,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3항과, 제30조(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항과,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4항과 제3장(권징) 제43조 (재판비용) 4항 9호(삭제)와, 제72조(위탁재판의 청원·책별(권징) 적용과 범위) 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가결하여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2. 총회 헌법시행규정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헌법개정) 부칙 제2조 (헌법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의거 노회 수의 과정없이 총회의 개정 결의 및 공포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노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헌법시행규정 개정 부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2장 정치	제2장 정치	
<p>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p> <p>1. 장로, <u>집사</u>,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p> <p>5. 장로, <u>집사</u>,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p> <p>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u>집사</u>,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p>	<p>제26조 [직원 선택] [개정 2012.9.20, 2017.9.21, 2018.9.13]</p> <p>1. 장로, <u>안수집사</u>,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 (당회 추천)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대리당회장)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세례교인 비례)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 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혹은 1인이 결원일 경우에는 후에 1인을 선택할 수 있다.</p> <p>5. 장로, <u>안수집사</u>,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p> <p>7.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u>안수집사</u>,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p>	<p><개정> '서리집사' 호칭 개선 방안으로 현행 헌법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p>

<p>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서리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p>	<p>11.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명예)안수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워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정년까지 집사에 준하여 제직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p>	
<p>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3.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p>	<p>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3. 무흠기간은 항존 직원(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 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p>	//
<p>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2.9.20.]</p>	<p>제30조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이 규정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2.9.20.]</p>	//
<p>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p>	<p>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4.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3조 제7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2.9.20]</p>	<개정> 헌법권징 조항 변경에 따른 근거 마련
제3장 권징	제3장 권징	
<p>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25, 2019.9.26] ① 고소(고발)·위탁재판의 청원·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만 원 총회 : 금 삼백만 원 ② 항소 노회 : 금 이백만 원 ③ 상고 총회 : 금 삼백만 원</p>	<p>제43조 [재판비용] 제1항 현행대로 제2항 현행대로</p>	

<p>④ 이의(불복)신청·재심청구·항고·재항고 당회 : 금 일백만 원 노회 : 금 이백만 원 총회 : 금 삼백만 원</p> <p>3.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처리회에 귀속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2.9.20]</p> <p>① 헌법 권징 제47조의 화해의 총응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화해로 간주한 때</p> <p>② 헌법 권징 제88조 3항에 의하여 고소의 취하로 인한 기소기각의 판결을 한 때</p> <p>4.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0, 2014.9.25]</p> <p>① 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p> <p>② 헌법 권징 제54조 2에 의한 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p> <p>③ 헌법 권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p> <p>④ 헌법 권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p> <p>⑤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국에 이의 신청을 할 때</p> <p>⑥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고소(고발)할 때</p> <p>⑦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처리회의 각 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p> <p>⑧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관련 100만 원 이상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임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 임원이 고소·고발을 할 경우나 총회장이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회가 기소 의뢰할 때</p> <p>⑨ <u>앞의 ⑦,⑧에 대하여 해당 처리회장이 다시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나, 앞의 ⑦,⑧에 대하여 해당 처리회장이 15일 이내에 고소(고발)장이나 기소의뢰장을 접수시키지 않거나 또는 위탁재판의 청원을 하지 않아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때</u></p>	<p>제3항 현행대로</p> <p>제4항 ①~⑧호 현행대로</p> <p>⑨호 삭제</p> <p><삭제> 헌법 권징 제120조 (위탁재판의 청원), 제121조(위탁재판 청원의 처리)와 헌법 권징 제14조(심판사항), 제20조(심판사항), 제26조(심판사항)와 상충되는 조항임.</p>	
<p>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p> <p>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p>	<p>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p> <p>제1항 현행대로</p>	

<p>2. 헌법 권징 제120조 1항에 의한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012.9.20.]</p>	<p>제2항 현행대로</p>	
<p>3. 헌법 권징 제120조 2항에 의한 당회나 교회의 분쟁으로 당회 재판국의 구성 또는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p>	<p>제3항 현행대로</p>	
<p>4. 헌법 권징 제120조 3항에 의한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그 경우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p> <p>① 당회장이 고소인(고발인)이 된 경우 ② 당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된 경우 ③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p>	<p>제4항 현행대로</p>	
<p>5. 헌법 정치 제64조 1항에 의한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 또는 제65조에 의한 폐당회가 된 교회와 장로 2인 미달 교회와 당회가 폐지된 교회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할 때에는 제3항과 같다. [개정 2012.9.20.]</p>	<p>제5항 현행대로</p>	
<p>6.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u>해 교회 당회장에게 기소 의뢰를 요청할 시(목사의 경우는 해 노회에), 해 당회장이나 노회장은 15일 이내에 즉시 기소의뢰나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u> [신설 개정 2014.9.25.]</p>	<p>6.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u>총회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 책벌할 수 있다.</u></p>	<p>헌법 권징 제120조(위탁재판의 청원), 제121조(위탁재판청원의 처리)와 헌법 권징 제14조(심판사항), 제20조(심판사항), 제26조(심판사항)와 상충되는 조항임</p>

끝.

총 회 장 이 순
 서 기 정



실장 이은미 총무 안영민 사무총장 김보현 서기 정훈

시행 행정-재무처-12112 (2022.10.13.)
 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5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www.pck.or.kr
 전화 02-741-4356 전송 /deux@pcknet.org /공개